

서귀포 동홍동 센트레빌 입주자 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2.14.**입니다. (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14.)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2019.02.14.이전)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조,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주택형별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 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www.applyhome.co.kr) 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 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 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hong-centrevil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턴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 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구청장은 제3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을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0.02.24.(월)	2020.02.25(화)	2020.02.26.(수)	2020.03.03.(화)	2020.03.17.(화) ~ 03.19.(목)
방 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 검색) 	당사 주택전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80-5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애플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가능)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귀포시 건축과 - 9091(2020.02.1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368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1층, 지상8층 7개동 총 212세대

[특별공급 총 85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2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0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40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면적 : 15,398㎡

■ 건축면적 : 4,004.5203㎡

■ 연 면 적 : 30,130.2678㎡

■ 주차대수 : 272대

■ 입주시기 : 2021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 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계		
민영 주택	2020000076-01	059.8882	59	59.8882	17.5373	77.4255	32.1361	109.5616	55.8344	54	5	5	10	1	21	33	7
	2020000076-02	078.9617	78	78.9617	22.5154	101.4771	42.3708	143.8479	73.6168	23	2	2	4	0	8	15	2
	2020000076-03	084.9196	84A	84.9196	24.2998	109.2194	45.5679	154.7873	79.1714	104	10	10	20	3	43	61	13
	2020000076-04	084.9757	84B	84.9757	24.5075	109.4832	45.5980	155.0812	79.2237	31	3	3	6	1	13	18	3
	합계										212	20	20	40	5	85	127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MDF실,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의 기타공용면적입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장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리플렛 등의 홍보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공급 세대 수	동호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입주 지정일					
								계약시	1차 계약금 입금후 30일 이내	2020.07.20	2020.10.20	2021.01.20	2021.03.20	2021.05.20	2021.07.20						
059.8882	32	106동	1층	4	48,652,000	249,048,000	297,700,000	10,000,000	19,770,000	29,770,000	29,770,000	29,770,000	29,770,000	29,770,000	29,770,000	29,770,000	29,770,000	89,310,000			
			2층	4	49,469,000	253,231,000	302,700,000	10,000,000	20,270,000	30,270,000	30,270,000	30,270,000	30,270,000	30,270,000	30,270,000	30,270,000	30,270,000	30,270,000	90,810,000		
			3층	4	50,287,000	257,413,000	307,700,000	10,000,000	2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30,770,000	92,310,000		
			4층	4	51,104,000	261,596,000	312,700,000	10,000,000	2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93,810,000		
			5층	4	51,757,000	264,943,000	316,700,000	10,000,000	21,670,000	31,670,000	31,670,000	31,670,000	31,670,000	31,670,000	31,670,000	31,670,000	31,670,000	31,670,000	95,010,000		
			6층	4	52,575,000	269,125,000	321,700,000	10,000,000	2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32,170,000	96,510,000		
			7층	4	53,392,000	273,308,000	326,700,000	10,000,000	22,670,000	32,670,000	32,670,000	32,670,000	32,670,000	32,670,000	32,670,000	32,670,000	32,670,000	32,670,000	98,010,000		
			8층	4	54,536,000	279,164,000	333,700,000	10,000,000	23,370,000	33,370,000	33,370,000	33,370,000	33,370,000	33,370,000	33,370,000	33,370,000	33,370,000	33,370,000	100,110,000		
	22	101동 102동	1층	3	47,999,000	245,701,000	293,700,000	10,000,000	1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88,110,000		
			2층	3	48,816,000	249,884,000	298,700,000	10,000,000	1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89,610,000		
			3층	3	49,633,000	254,067,000	303,700,000	10,000,000	20,370,000	30,370,000	30,370,000	30,370,000	30,370,000	30,370,000	30,370,000	30,370,000	30,370,000	30,370,000	91,110,000		
			4층	3	50,450,000	258,250,000	308,700,000	10,000,000	2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30,870,000	92,610,000		
			5층	3	51,104,000	261,596,000	312,700,000	10,000,000	2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31,270,000	93,810,000		
			6층	3	51,921,000	265,779,000	317,700,000	10,000,000	2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31,770,000	95,310,000		
078.9617	23	101동 4호 102동 2호 107동 2호	1층	2	62,577,000	318,423,000	381,000,000	10,000,000	2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2층	3	63,563,000	323,437,000	387,000,000	10,000,000	2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3층	3	64,548,000	328,452,000	393,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4층	3	65,534,000	333,466,000	399,000,000	10,000,000	2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5층	3	66,519,000	338,481,000	405,000,000	10,000,000	3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6층	3	66,683,000	339,317,000	406,000,000	10,000,000	3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21,800,000		
			7층	3	68,654,000	349,346,000	418,000,000	10,000,000	3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8층	3	69,968,000	356,032,000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084.9196	40	105동 107동 3호	1층	5	70,825,000	360,675,000	431,500,000	10,000,000	3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129,450,000			
			2층	5	71,974,000	366,526,000	438,500,000	10,000,000	3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43,850,000	131,550,000			
			3층	5	73,123,000	372,377,000	445,500,000	10,000,000	3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133,650,000			
			4층	5	74,272,000	378,228,000	452,500,000	10,000,000	3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45,250,000	135,750,000		
			5층	5	75,421,000	384,079,000	459,500,000	10,000,000	35,950,000	45,950,000	45,950,000	45,950,000	45,950,000	45,950,000	45,950,000	45,950,000	45,950,000	45,950,000	137,850,000		
			6층	5	76,734,000	390,766,000	467,500,000	10,000,000	3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46,750,000	140,250,000		
			7층	5	77,965,000	397,035,000	475,000,000	10,000,000	3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47,500,000	142,500,000		
			8층	5	79,442,000	404,558,000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200,000		
	64	102동 3호 103동 2,3,4호 104동 1,3,4호 107동 1호	1층	8	69,840,000	355,660,000	425,500,000	10,000,000	3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42,550,000	127,650,000		
			2층	8	70,989,000	361,511,000	432,500,000	10,000,000	33,250,000	43,250,000	43,250,000	43,250,000	43,250,000	43,250,000	43,250,000	43,250,000	43,250,000	43,250,000	129,750,000		
			3층	8	72,138,000	367,362,000	439,500,000	10,000,000	3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4층	8	73,287,000	373,213,000	446,500,000	10,000,000	3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133,950,000		
			5층	8	74,436,000	379,064,000	453,500,000	10,000,000	3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45,350,000	136,050,000		
			6층	8	75,749,000	385,751,000	461,500,000	10,000,000	36,150,000	46,150,000	46,150,000	46,150,000	46,150,000	46,150,000	46,150,000	46,150,000	46,150,000	46,150,000	138,450,000		
			7층	8	76,898,000	391,602,000	468,500,000	10,000,000	36,850,000	46,850,000	46,850,000	46,850,000	46,850,000	46,850,000	46,850,000	46,850,000	46,850,000	46,850,000	140,550,000		
			8층	8	78,375,000	399,125,000	477,500,000	10,000,000	3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143,250,000		
			084.9757	31	101동 3호 103동 1호	1층	3	69,836,000	356,264,000	426,100,000	10,000,000	3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127,830,000
						2층	4	70,984,000	362,116,000	433,100,000	10,000,000	3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43,310,000	129,930,000

104동 2,5호	3층	4	72,131,000	367,969,000	440,100,000	10,000,000	3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132,030,000
	4층	4	73,278,000	373,822,000	447,100,000	10,000,000	3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134,130,000
	5층	4	74,426,000	379,674,000	454,100,000	10,000,000	3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45,410,000	136,230,000
	6층	4	75,737,000	386,363,000	462,100,000	10,000,000	3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46,210,000	138,630,000
	7층	4	76,884,000	392,216,000	469,100,000	10,000,000	3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46,910,000	140,730,000
	8층	4	78,359,000	399,741,000	478,100,000	10,000,000	37,810,000	47,810,000	47,810,000	47,810,000	47,810,000	47,810,000	47,810,000	47,810,000	143,430,000

-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주택전시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면적 합산 시 소수점 4자리에서 단수 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8882	078.9617	084.9196	084.9757
약식표기	59	78	84A	84B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락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별도 신청을 통해 계약 가능합니다.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1차 계약금 및 2차 계약금 포함) 완납 시 중도금 대출(무이자)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무이자 조건 분양(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 계약자가 납부)이며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 하고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전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아파트의 경우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에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 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7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에 따라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59	78	84A	8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2	-	4	
	장기복무제대군인	1	1	2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2	1	4	
	중소기업근로자	1	-	2	1	4	
	장애인	1	-	2	1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5	2	10	3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8	3	15	5	31
		일반공급(25%)	2	1	5	1	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1	0	3	1	5	
합계		21	8	43	13	8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에게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예비포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요건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2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 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사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4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19.2.25.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401,814원	6,165,202원	6,699,865원	7,348,891원	7,997,917원	8,646,94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482,177원	7,398,242원	8,039,838원	8,818,669원	9,597,500원	10,376,332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401,815원 ~ 6,482,177원	6,165,203원 ~ 7,398,242원	6,699,866원 ~ 8,039,838원	7,348,892원 ~ 8,818,669원	7,997,918원 ~ 9,597,500원	8,646,944원 ~ 10,376,332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482,178원 ~ 7,022,358원	7,398,243원 ~ 8,014,763원	8,039,839원 ~ 8,709,825원	8,818,670원 ~ 9,553,558원	9,597,501원 ~ 10,397,292원	10,376,333원 ~ 11,241,026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 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 후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관련된 전화문의는 일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자(정보취약 계층)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 청약 신청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선정, 발표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입주자선정과 함께 '청약Home'에서 수행합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입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 서류

해당자격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직장 가입자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해당)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운용함.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2019.02.14.이전)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01.0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함. • 일반공급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② 전용면적 85㎡ 초과 100%는 추첨제로 적용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2019.02.14.이전)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위는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

<p>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02.14.)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일 현재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6개월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1순위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과거 2년 이내 가점제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가입한 자)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차액 충족 기준 : 청약신청전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가능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2.24.(월) 08:00 ~ 17:3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0.02.25.(화) 08:00 ~ 17:30	-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0.02.26.(수) 08:00 ~ 17:30		

- ※ 스마트폰앱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가능)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인터넷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인터넷 취약자인 경우에만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 됨.(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 : 00 ~ 16 : 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주 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 '청약Home'(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 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 스마트폰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청약Home' 검색)(애플앱스토어 어플은 향후 이용가능)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1영업일 전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출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p>※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p>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현장 접수 시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시는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기간에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시는 "인감도장" 제출 생략(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공문에 의한 명부로 접수함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자녀로 확인 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의료기관명과 임신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주택전시관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상세"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전시관에서는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아파트 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시는 "인감도장" 제출 생략(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3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 미혼인 만30세 미만 직계비속(주민등록표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입일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및 배우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및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봄(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소명 서류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2.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자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

■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9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칭,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9세 이상 ~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해당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일반공급의 경우이며,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 처리일

③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④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 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건설업자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511호, 2005.05.26. 개정·시행)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

-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배우자 포함)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은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②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③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 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촉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전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대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중보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3.03.(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03.17.(화) ~ 2020.03.19.(목)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주택전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80-5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 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 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검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검수는 당첨자 계약 체결시 부적격 서류 검수 및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리세대 당첨자의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일정에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추후통보)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donghong-centrevill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쑤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3.03.(화) ~ 2020.03.12.(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휴대폰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20.03.03.(목)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 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동홍동 센트레빌 주택전시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당첨자 발표 후 추후통보 •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제출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주택전시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80-5번지 / 064-762-9700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 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대)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VI 계약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일정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0.03.17.(화) ~ 03.19.(목) 3일간, 10:00 ~ 16:00	당사 주택전시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80-5번지)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 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 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주택전시관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세대”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아래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 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2019.11.0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게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계약시 구비사항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는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전 사전검수를 받지 않은 당첨자는 아래의 구비서류 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여야 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계약서류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주택전시관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NH 농협은행	317-0017-8538-51	(주)한국토지신탁

- ※ 지정된 계약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ex) 105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105501홍길동”으로 기재

- ※ 본 계약은 분양 대금 납부계좌로 향후 금융기관의 CMS 체계로 타행 입금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지정납부일 이전에 선납하는 중도금/잔금에 대해서는 선납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또한 일시납에 대한 선납할인 적용 없음)

■ 계약자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예정)을 통해 용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계약금)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대출용 자금을 대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도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분양대금계좌 내 신탁재산의 한도내에서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을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1년 11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일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어린이놀이터(1개소),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 GX룸, 스크린골프, 다목적실,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코인세탁실, 락커·샤워실 등), 휴게시설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Ⅶ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잔금 (입주지정일)
59	10,300,000	1,000,000	9,300,000
78	11,000,000	1,000,000	10,000,000
84A	12,500,000	1,000,000	11,500,000

84B	11,900,000	1,000,000	10,900,000
-----	------------	-----------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을 요합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주택전시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주택전시관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ex) 105동 501호 홍길동의 경우, "105501홍길동"으로 기재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KB국민은행	839237-04-018108	(주)한국토지신탁

◎ 유의사항

- 비확장 발코니 선택시, 발코니 외부측 벽면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추후 창호 설치는 세대입주자 부담으로 부과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전체 주택형의 외부 창호(비확장 발코니 외부창호 포함),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전동빨래건조대, 세탁실 선반, 거실 우물천정, 냉장고/김치냉장고장, 아일랜드 식탁, 간이파우더장(84A, 84B) 등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사양 및 색상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 기타 창호부속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희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희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및 발코니 내부로의 우수유입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돌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가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 대금 계좌로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비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을 요합니다.
- 아래의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하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계약금 납부 : 주택전시관에서 현금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계좌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203-843232	동부건설(주)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위치	제조사	실내기 설치대수	금액
59	ALT-1	거실 + 침실1	삼성전자 또는 LG전자 제품으로 설치 예정	2대	3,480,000
	ALT-2	거실 + 침실1, 침실2 / 거실 + 침실1, 침실3		3대	4,770,000
	ALT-3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4대	5,940,000
78	ALT-1	거실 + 침실1		2대	3,630,000
	ALT-2	거실 + 침실1, 침실2 / 거실 + 침실1, 침실3		3대	4,960,000
	ALT-3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4대	6,610,000
84A / 84B	ALT-1	거실 + 침실1		2대	3,630,000
	ALT-2	거실 + 침실1, 침실2 / 거실 + 침실1, 침실3		3대	4,960,000
	ALT-3	거실 + 침실1, 침실2, 침실3		4대	6,610,000

◎ 빌트인 냉장고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제조사	모델명	설치대수	금액	비고
전타입	삼성	삼성BRS665040SR	1	5,900,000	

◎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내용	금액	비고
59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210,000	알루미늄프레임 + 강화유리 패턴 + 비산방지필름
78 / 84A / 84B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180,000	

◎ 평면 선택형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내용	금액	비고
84A	알파룸 수납강화형	1,970,000	
84B	알파룸 수납강화형	1,500,000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금 납부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후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동가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전 위치 확인 요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거실/침실1(안방)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일반에어컨 배관용 슬리브 또는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과 침실1(안방)에 일반에어컨 배관용 슬리브 또는 냉매배관이 기본 설치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단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신발장 측면에 벽체가 시공됩니다.
- 현관중문 옵션 미선택시 몰딩, 디딤판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개폐방향은 해당세대에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옵션 선택시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되거나 디자인 및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선택시 시공상 마감공를 또는 벽패널과 다소 이격이 생기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는 별도의 가구패널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판매가격은 옵션선택시 삭제되는 일반냉장고 수납장(상부장 설치)과의 차인액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전 주택전시관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구분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일괄선택 (개별선택불가)	문	목재문(문틀, 문짝, 도어록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PL창호(터닝도어 포함) 등	목재문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실 제외), 발코니 내부 PL창호(시트지 제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바닥	바닥재(마루판, 현관바닥타일, 현관디딤판 등 일체),걸레받이,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실외기실, 바닥마감 등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우수선출통
	벽	벽지, 장식벽(벽지, 타일, 래핑 및 벽패널류), 발코니벽 도장, 현관 전신경 및 패널마감(해당 주택형), 드레스룸 장(도어 및 선반/ 해당 주택형),신발장, 현관수납장(해당 주택형), 화장대(상판 및 거울 포함), 불박이장(해당 주택형), 발코니 선반류, 경량벽체 등	콘크리트 벽체 위 초배지 마감 또는 기타 부위 석고보드 마감
	천장	천장지(벽지류), 반자돌림(몰딩), 발코니 천장도장 등	천장면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면처리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형 조명등기구, 욕실매입등	배관,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매입형 조명등기구
	욕실	천장재(천장을 포함), 타일(바닥, 벽), 뒷선반,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수전, 샤워기 등),샤워부스, 코너선반, 욕실 악세서리, 욕실장, 바닥배수구 커버, 욕실환풍기, 비상콜 및 비데(부부욕실), 스위치 및 콘센트 등	액체방수 및 구체위 바탕처리,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배기덕트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렌지후드, 하이브리드쿡탑, 음식물 탈수기, 각종 빌트인 가전류, 주방액정TV 등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전기 통신 배관/배선(주방 TV폰 등의 전기입선)
	일반가구 및 기타사항	현관신발장, 시스템장, 거울, 드레스룸, 화장대, 욕실장, 불박이장,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월패드, 설비배관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59	78	84A	84B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13,530,000	16,218,000	18,198,000	18,198,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분양가는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양금액으로 합니다.

※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1.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2.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5.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6.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7.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8.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 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10.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12. 입주 후 마이너스 옵션 세대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약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4.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호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5.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16.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약약을 작성하여야 함

■ 기타 주요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친환경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서

-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의 단열재 설치는 비난방공간과 면하는 난방공간의 외벽을 단열조치하여야 한다.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라야 한다.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라야 한다.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 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설치(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 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 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기타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및 본 단지의 명칭은 추후 사업주체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유로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포함 주변 도로 및 지역에 실행중 또는 실행예정인 정책계획을 관련 행정부서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책계획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책계획은 개발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업지와 연관이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점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시행인가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주택전시관,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후 토지를 취득 하여야 함.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급대상의 당사자는 위탁사와 계약자이며, 시공사는 공급대상의 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건 공급대상 개별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의 분양홍보자료와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p>주택전시관 / 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청약 및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내·외부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세대 내 플라스틱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와 당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되는 부대시설 및 조경 등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주택전시관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주방TV, 윌패드, 우, 오수 배관의 위치, 선통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노출되어 설치된 전시조명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주택전시관 전용으로 실공사와는 무관하며, 본공사시 소방법령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승인도서(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에 준합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도로, 옹벽 등)는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건본주택건립 세대에 한함, 그 외 타입은 이미지제공)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 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안내 및 건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외부 조망뷰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종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홍보자료 (특화아이템 전시부스, 인터넷 자료 포함), CG, 참고이미지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야간경관조명,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모형 및 CG등에 표현된 사업지 인근 도로, 가로수, 횡단보도, 녹지, 하천, 다리 등은 현황 및 향후 정책예정사항을 바탕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준공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남측의 8m 도시계획도로와 단지 동측 10m 도시계획도로는 입주시 개설이 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변경승인 및 신고 포함)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상구조물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문주,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인근도로의 신설,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시설 레벨, 지하층 층고,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계단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단지 내외부의 건축물 및 도로방향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조망권 및 일조량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검사 전 소음측정을 통해 소음기준이 미달할 시에는 단지외곽 일부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석축, 경계석, 계단, 마운딩(구릉) 및 자연경사 처리구간 등의 구조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또는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주변(101동, 102동, 104동 인근의) 비닐하우스 및 전답 등에 의한 조망, 소음, 냄새, 빛반사, 분뇨로 인한 악취 등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및 102동 북측면으로는 기존 전신주로 인한 조망권 및 환경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영구음영 포함)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쉼큰, 부지 고저차, 공간명칭, 조경계획(석가산, 식재, 포장, 어린이 놀이터,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각종 시설물 계획(옥탑시설물,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DA, 차량 차단기, 주차램프시설, 자전거 주차공간, 지상 장애인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문주, 단지 내외부 옹벽, 옥상정원난간, 외부공용난간, 캐노피, 주민공동시설 엘리베이터, BI 및 CI, 지하 침투저류조, 배기탑, 계단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주동 외벽마감, 주동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건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위치,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사업지 지질여건 및 굴토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구조, 기초레벨, 지하층 및 지하층 피트공간(층고,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 지반층 토심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분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시공사 사정에 따라 사업지 경계는 콘크리트 옹벽, 전석, 울타리, 철재난간 등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 내 전시된 단지모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위치, 구역, 높이,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공법, 구역,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동출입구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옹벽 또는 조정석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바닥포장, 지상, 지하 동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할 경우 단지내 도로(인도포함)를 점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시설물, BI 및 CI, 입면색채계획 등은 시공시 검토로 인하여 위치, 크기, 디자인 및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 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방법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양, 위치, 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주차 후 동 출입구까지 동선길이가 길어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소방차 부서공간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생활권 침해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은 101동과 104동 인근에 총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생활폐기물(음식물 포함) 보관시설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사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아니므로 단지 내 별도의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가 101동과 103동 인근 총 2개소가 설치됩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진동,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 정화조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한 D/A(환기구) 및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와 크기가 각 동 1층 필로티, 지상층, 옥상에 설치되며, 이와 인접한 세대의 경우 냄새, 소음 및 조망권 침해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분양홍보물(모형/배치도/등)을 참조하여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는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주동 및 인근에 총 6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냄새 및 소음, 진동, 시각적 불쾌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층에 발전기용 D/A(환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하부에는 기계 및 전기실등이 위치하며, 장비 및 시설 등의 운용에 의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지하에 정화조가 설치되며, 정화조 배기덕트가 지하주차장을 통과하여 103동 옥상까지 설치됨에 따라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다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위치, 크기 등 세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에는 세대 화장실 및 정화조 배기팬이 설치되며 세대 화장실 배기팬은 단지 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침투저류조는 105동, 107동 인근 지표면 아래에 총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침투저류조의 위치, 크기, 재질, 사양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시 냄새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별 주동의 출입구의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합니다. 이에 건물주택내의 모형 및 도면을 확인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외부장식물에 의해 조망 및 일조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출입구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1층 필로티 하부에 무인택배함이 1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위치, 크기, 개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따라 일부 동은 무인택배시설 이용동선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및 호별로 계단의 높이, 폭, 단수, 마감 및 E/V실의 배치, 높이, 크기, 인승, 속도, 작동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난간 및 난간턱의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각 동에는 최상층은 승강기제어반 등의 설비가 설치되며,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포함), 경비실 등이며 내·외부시설물 및 내·외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품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4동 하부에는 경로당 및 MDF실이 위치하며, 이용자 등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 및 106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 GX룸, 락커룸, 샤워실, 게스트하우스, 독서실, 코인세탁실, 다목적실 등)이 위치하며, 시설의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시설물은 계획사항으로 준공 시 시설물의 용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가 105동 및 106동 일부 세대 부근 및 외부 조정공간 부분에 설치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조경, 세부 식재계획 및 조경선형 등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어린이 놀이터, 파고라, 자전거보관소, 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위치, 규모 및 색채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차로 및 보행로, 주차구역 등), 산책로 등 포장재의 재질, 색채 및 디자인은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세대 전면의 조경 공간은 외부 보행자로부터 세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층 세대 조경 완충 공용공간은 “세이프티존(Safety Zone)”으로 가칭하였으며, 각각의 세이프티존은 1층 세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설치한 공간입니다. 또한 세이프티존은 1층의 모든세대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치 해당 여부는 모형으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설치되는 수경시설은 관상용으로 직접이용이 불가한 시설로써, 음용 및 들어가거나 오르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수경시설(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설치로 인하여 101동, 102동, 103동 인근세대는 조망,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조경 및 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벌레 등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3동 남측으로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북측 및 서측, 103동 북측, 104동 동측 및 북측, 105동과 106동 사이, 107동 남측으로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 남측 및 106동 서측으로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에는 조경공간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 및 8층 거주세대에 조망, 소음, 사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옥상에 설치한 조경공간 및 시설(마운틴가든, 피크닉가든, 오션가든 등)은 해당동 입주자들이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가칭)’을 통해 출입 및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조경공간은 단지 전체의 조화와 현장 여건, 인허가 내용에 따라 위치, 형태, 크기, 패턴 및 식재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남동쪽, 102동 남서쪽, 107동의 남쪽에는 소방차량 전용구역(12X6M)이 구획되며, 다만 단지 특화를 위해 일부구간 친환경포장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등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전기 및 기계 설비와 관련한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됩니다.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공간에 화차 공간이 없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지하 1층 2.4m로 사다리차, 대형차,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상, 지하주차장은 골조 구조상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천정구간에는 별도의 마감(수성페인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에서는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제연헬름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헬름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트랜치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랜치폭을 포함하며, 측면, 배면 트랜치 시공시 주차라인마킹은 하지 않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반주차 및 일부 장애인주차는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지상 주차장은 전기자동차 및 나머지 장애인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내의 모형 및 도면을 확인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 주차시 각 주동 지하출입구, 옥외계단(2개소), 옥외 엘리베이터(1개소)를 통해 단지 지상부 외부공간으로 이동가능합니다. • 104동 북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며, 인접된 저층부세대는 차량의 전조등 및 소음, 매연등 환경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에는 전기자동차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설치되며, 주차장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 불빛 및 소음, 매연등 환경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2동 1호, 2호 라인인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 램프 점등, 차량 전조등,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05동 인접 지상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전기차 충전기(완속 4개소)가 설치되어 저층부 일부세대는 조망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변경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부분 문주의 위치, 크기, 형태, 재료, 색상, 마감 등은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는 2차로(진입1차로, 진출1차로) 설치되며, 남측의 보행자 주출입구는 추후 지자체의 도로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도로와 대지의 단차로 인해 계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근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워셔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저층부 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보행로, 지상 주차공간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 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위 세대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전시관내 모든 사양 및 치수는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안방, 드레스룸, 실외기실 등 측벽과 인접한 실내공간의 내부 폭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라 하더라도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인근 도로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 차량의 전소등으로 인해 불편할 수 있으며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해당동 호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거실 및 침실 등의 층고는 2.85M(최상층 2.95M), 천장고는 2.35M(확장시 설치되는 거실 우물천장고는 2.47M)이며 본 공사시 세대내 천장높이는 허용오차범위내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에 설치된 거실 우물천장은 기본형(비확장)세대에 설치 되지 않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선택형 추가 옵션품목의 경우 최초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 시공이 되며, 이후에는 배선, 배관 등 관련 설비공사에 따라 선택변경이 불가합니다. • 최하층 세대와 기타층 세대간 천장속 공간과 천장고, 천장의 형태(단천장 유무, 조명위치 포함) 등이 상이하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일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발코니, 욕실(샤워부스 포함), 현관 등의 단차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78형, 84A형, 84B형의 경우 확장시 선택형 평면에 따라 일부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스위치, 전등, 콘센트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고,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거실, 발코니, 주방, 욕실, 현관 등의 타일류는 줄눈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방가구에 설치되는 주방액정TV, 조리기구 행거, 선반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주택전시관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걸릴 수 있음) • 거실 아트월 부위는 타일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벽걸이 TV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져있더라도, 자재특성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하며, 입주 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가구의 제조사, 시공디테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빌트인 가전(냉장고)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일반가구(수납장) 및 주방가구는 평형에 따라 일부 확장제품이며, 기본형(비확장)세대 또는 미선택시 기본마감(도배, 마루 등)으로 시공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주방가구, 침실 불박이장, 욕실장 등 일반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후면, 천장, 측면, 바닥면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POP포함)와 본공사시 단위세대의 안목치수는 시공오차 범위내에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불박이장 설치시 반드시 실측치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소유하신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사양 및 크기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설치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조대리석류(싱크대상판, 화장대상판, 욕실선반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가구는 확장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수납가구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내부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가구내부에 적용된 약세서리 및 하드웨어는 본공사시 사양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현관 방화문은 본공사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현관 디딤석은 자재의 특성상 무늬, 색깔 등이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현관 중문의 경우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 중문 미선택시 건식벽체가 설치되며 몰딩, 가구, 디딤판,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시 거실발코니 창호의 크기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전시관 또는 각종 홍보물상의 사진 및 이미지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난간높이, 입면의 형태, 친환경주택 성능수준 등이 분양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높이, 형태, 색상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난간대의 형태, 나누기, 색상, 프레임 두께 및 재질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 벽체하부에 오염방지 도장이 시공되며, 도장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및 결빙 등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발코니2(보조주방) 출입문은 플라스틱 도어로 설치되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발코니2(보조주방)에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현장여건 및 세대타입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전열교환기(제습겸용) 가동시 장비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기구 부분 및 윗층세대 피난구 투영 바닥부분 포함하여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 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문은 철제문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기준과 동등하거나 이상인 제품의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시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외부창호는 그릴창으로 설치됩니다. • 확장시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창호에는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설치되는 세대 내 외부 발코니(확장시)의 실외기공간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미관상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는 출입문과 피난사다리 간섭여부를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 구조계산 및 안전성에 따라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구조계산 및 안전성에 따라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회사의 도산 및 제품 단종 등의 사유로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개 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외측창 1면에만 반강화유리가 적용되며, 더블접합 고강도 보강재는 거실창 세로 프레임에만 적용 됩니다. • 창호에 적용된 특화 Item(반강화유리, 고강도보강재, 물막이턱, 창문이탈방지구 등)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적용됩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설치되는 외부창호 외부면(침실 분합문 제외)은 착색프레임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마감과 다소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실외기실 창호 포함)와 문 및 기타 창호부속자재의 사양 및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개수, 디자인, 형태, 규격,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비확장세대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전기/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세대내 입상관, 도기, 수전, 액세서리, 환기 디퓨저, 배수구, 스위치, 콘센트의 위치 등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적용모델은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내 설치된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유상유선으로 제공되며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택전시관의 경우 자체 난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 설치) 또한 본 공사시 설치위치, 사양 및 디자인,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세대환기(제습겸용) 디퓨저는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디자인, 재질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가스배관 및 가스계량기, 분전함, 윌패드, 세대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는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통신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윗층세대가 비확장형일 경우 층간 단열재 두께로 인하여 아랫층 세대(비확장형, 확장형)는 본 공사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표기한 주방 가스배관 설치위치는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 및 바닥구배에 의한 단차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거실 및 침실 등에 설치된 환기 디퓨저는 본 공사시 위치와 개소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보일러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 욕실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크기 및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적용될 가전기기의 모델사양은 제조사의 사정에 의해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 및 램프의 개수, 위치 등이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내 조명기구, 월패드(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위치 및 사양, 디자인은 주택전시관과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다용도실에 전시된 건조기는 전기식 건조기 설치사례로 가스식 건조기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 84A형의 경우 확장시 평면 선택형에 따라 주방 우물천장 및 등기구가 변경되며, 본공사시 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_주방 우물천장 미설치, 직부등 / 수납강화형_주방 우물천장 설치, 팬던트등]
- 확장시 주방에 설치되는 스마트폰 무선충전 겸용 매립형 콘센트는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건조대는 등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발코니 등과 스위치(배관배선 포함)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내 주방의 식탁 조명등 위치는 본 공사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상 1~2층 및 최상층 세대의 방법을 위하여 세대내부에 동계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전동 15인승, 90m/min의 기계실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101동 필로티에 무인택배보관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사용상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TV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됨
- 입주후 세대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시, 반드시 해당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홈IoT 및 AI스피커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
- 홈IoT 및 AI스피커의 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IoT 연동 가전기기를 구매하시면 무선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가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홈IoT 및 AI스피커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3년간 무상제공 홈IoT서비스
-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벽에 노출 시공되며 설치위치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무상제공기간	무상제공 종료 이후
세대 내	KT 기가지니2	기본제공(1개)	-
	홈IoT 및 인공지능 서비스	3년	계속 이용 시, 세대별 별도 가입

- ※ 서비스내용은 (주)케이티에서 제공하는 항목으로 추후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들의 사유로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음.
- ※ 케이티 기가지니 서비스 중 일부는 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가능함.
- ※ 케이티 기가지니 서비스 중 홈IoT가전 서비스는 기가지니 홈IoT와 호환이 되는 전용 가전에만 이용가능함.
- ※ IoT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함(통신사 무관)
- ※ 무상제공기간은 입주지정 시작일로부터 3년임
- 홈IoT / 기가지니 유의사항
 - 홈IoT / 기가지니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이 필요함
 - 제공되는 AI 스피커 단말은 입주시 제공되는 품목으로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단말기의 종류는 입주시점에 동등 또는 이상사양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외형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홈IoT / 기가지니 서비스는 AI 스피커와 홈네트워크 연동 서비스로 3년간만 무상 제공되며, 계속 이용 시 서비스료가 발생하며 세대별 별도 청약을 해야함
 - 홈IoT / 기가지니 서비스는 월패드(Wall-Pad)의 메뉴를 중심으로 제공되며 세부 기능 및 서비스의 종류는 입주 시 가능한 기술로 적용됨
 - 홈IoT / 기가지니 서비스는 무선 네트워크 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임
 - 타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IPTV 연동은 불가하지만 홈IoT 및 AI 서비스는 이용 가능함
 - 타사 IPTV를 사용하는 경우, AI 스피커 음성명령을 통한 TV채널 변경과 음량조절 서비스 이용이 불가함
 - 인공지능 IoT 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주)케이티의 사업정책에 따라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케이티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층 하부세대 층고는 기준층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면 및 창호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소방관련법규에 따라 각 세대 대피시설 및 추가 피난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공간구성 및 면적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p>건물 입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주동건물, 주민공동시설, 공용시설, 창호, 옥외시설물, 옥상바닥, 난간, 루버, 옹벽 포함), 형태(측벽 메지, 저층부 및 출입구 디자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디자인, 옥상 및 옥상구조물, 세대 및 부대시설 창호 크기 포함),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심의(또는 자문) 법규의 변경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옥상 및 옥탑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등을 통해 재료 및 마감, 부재의 크기, 디자인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및 기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변경사항은 고지 예정으로 추후 변경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면차별화 및 기능개선, 사인물(BI 및 CI 등) 설치 등을 위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측벽 문양 및 위치는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고, 입면특화 등을 위한 외부물딩 설치 등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높은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외벽에 보일러 연도, 전열교환기 급배기구 및 주방 후드 배기구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타공시공이 이루어지며 외부로 연도가 설치되며,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시관내 전시된 단 지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주동 입면에 주방 배기구, 전열교환기 급배기,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며 단지 모형에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시공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피로티, 캐노피, 창호 (크기, 모양, 색, 사양 등), 난간 (크기, 모양, 색, 재질 등),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 램프 등의 위치, 형태, 크기, 색, 재질, 사양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입면상 보이는 외관 특화부분에 의하여 일부세대에서는 시야에 특화부분이 노출될 수 있으며, 외부 특화에 의하여 세대내 창호 공들 프레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마감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p>단지 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인허가청의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 등에 따라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 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토목/기계	전기/소방/정보통신	비고
회사명	㈜케이씨엠엔지니어링	㈜아성기술단	
감리금액	803,715,000	93,5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기간	보증금액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61,093,130,000 (육백일십억구천삼백일십삼만원)	제01282020-101-0000100호

※ 본 주택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주요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금융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p>
<p>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p>	<p>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공급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p>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p> <p>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p> <p>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p> <p>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p> <p>7. 보증채권자가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p> <p>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p> <p>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p> <p>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p> <p>11. 보증사고 전에 주택공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p> <p>13.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 홀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와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 이전에 그 주택공급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p>
<p>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p>	<p>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공급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에 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

1. 「본 사업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위탁자인 주식회사 리치스타,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및 시공사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리치스타이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2. 본 사업은 위탁자 주식회사 리치스타와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공급하는 것으로, 본 모집공고상 사업주체의 책임과 관련하여 신탁사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과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인 주식회사 리치스타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수분양자(매수인)는 분양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이행, 수분양자 앞 소유권이전, 하자담보책임, 입주지연 지체상금 지급 등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가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리치스타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개설된 분양대금 수납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5.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탁자 주식회사 리치스타 및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인 주식회사 리치스타 및 시공사인 동부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매수인)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개별분양 세대(호실)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리치스타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7. 「신탁목적 달성,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리치스타와 수탁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식회사 리치스타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본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 주식회사 리치스타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8.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제1순위 우선수익자 지급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9. 「중도금을 3회 이상(연속한 경우에 한정하지 아니함)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 분양(공급)계약서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시행사 및 시공사

구 분	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겸 시행사(사업시행자)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리치스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동부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2, 218호 (삼성동, LG선릉에클라트 B)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역삼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 디동 21-30층)
법인등록번호	110111-1300807	110111-1258220	110111-0005002

▣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상호 및 명칭 : 부동산개발업자 ㈜한국토지신탁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서울-080010호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건축허가(사업승인번호) : 2016-도시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5(2019.11.07.)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 예정일
 - 착공 : 2019년 11월
 - 준공(예정) : 2021년 09월
 - 공급 예정일 : 2021년 11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시공업체 : 동부건설(주) (현장상황 및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분양대행사 : 휴이언(주) (현장상황 및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자체관리
 - 토지거래허가 구역 여부 등 법령상 규제사항 없음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주)한국토지신탁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donghong-centreville.co.kr>

■ 주택전시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80-5번지

■ 분양문의 : ☎ 064-762-97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 바랍니다.